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 조례안

의 안 번 호 21-108

제출년월일 : 2021. 11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해당법령 제정에 따른 자치구 조례 제정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생애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, 편리·쾌적·미관·기능 등 사용가치 유지·향상을 기대 및 구민의 안전확보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건축물관리 점검 및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 명시(안 제3조~ 제6조)
- 다.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및 해체공사감리자 교체에 관한 사항(안 제7, 8조)
- 라.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규정(안 제9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건축물관리법」, 「건축물관리법 시행령」
- 2)「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1. 8. 19. ~ 2021. 9. 8.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3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- 5) 제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(2021, 10, 25,)

•••••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건축물관리법」 및 「건축물관리법 시행령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한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제3조(정기점검 대상) 「건축물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8조 제1항제1호에서 "조례로 정하는 건축물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 - 1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호, 제3호 부터 제6호까지,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
- 2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2호, 제7호, 제7호의2, 제8호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
- 3.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건축물

- 제4조(긴급점검 대상)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"조례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.
 - 1.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
- 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(이하 "재난"이라 한다) 으로 구조안전에 피해를 입은 건축물
- 3. 「소방기본법」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내 건축물
- 4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
- 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
- 제5조(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) ① 「건축물관리법」(이하"법"이라한다)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"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"이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으며, 30년 이상 된 연면적 660제곱미터이하인 민간건축물을 말한다.
 - 1.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
- 2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
- 3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에 따른 시설물
- 4.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
-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"조례로 정하는 건축물"이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- 1.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
- 2.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

제6조(안전진단 대상)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"조례로 정하는 경우"란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
- 1.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- 2.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7조(해체신고 대상)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"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- 1.「건축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
- 2.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
- 3.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
- 제8조(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) 영 제23조제4호에서 "조례로 정하는 경우"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1.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
 - 2. 해체공사감리자가 직무태만,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- 제9조(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) ① 구청장은 영 제31조에 따라 빈 건축물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(이하 "감정평가법"이라 한다)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별표 3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평

가하여 선정한다.

- ②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.
- 1.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
- 2.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
- 3. 감정평가법 제49조 및 제50조 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5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
-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빈 건축물 소유자의 요청이 있거나 빈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감정평가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-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 -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
- 2. 미첨부 근거 규정
 - ○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- 3. 미첨부 사유
 -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 점검 및 해체신고 등에 대한 대상을 구체적 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 의안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없음.
- 4. 작성자 : 도시환경국 도시안전과 김경수 (☎ 3153-6083)